

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
[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]

1.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- 가. 제품명 : AQUACER 1061
- 나. 제품의 용도 및 사용상의 제한
- 1) 제품의 용도 : 페인트용 첨가제
 - 2) 사용상 제한 : 자료없음
- 다. 제조자 정보
- 1) 회사명 : BYK-Cera bv
 - 2) 주소 : Danzigweg 23 7418 EN Deventer
 - 3) 전화번호 : +31 881 220 300
 - 4) 담당자 : Regulatory Affairs
 - 5) 긴급연락처 : +49 6132 84463
- 라. 공급자 정보
- 1) 공급회사명 : 유니소재 (주)
 - 2) 주소 :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581
 - 3) 전화번호 : (031) 766-8341
 - 4) 담당 부서 : 영업부
 - 5) 담당자 : 전명진

2. 유해, 위험성

- 가. 유해, 위험성 분류
- 1) 물리적 위험성 분류 : 분류되지 않음
 - 2) 건강 유해성 분류 : 해당없음
 - 3) 환경 유해성 분류 : 해당없음
- 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- 1) 그림문구: 자료없음
 - 2) 신호어: 자료없음
 - 3) 유해, 위험 문구
요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이용가능함(EUH210)
1,2-Benzisothiazol-3-one 함유.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(EUH208)
 - 4) 예방조치문구
- 예방: 자료없음
- 대응: 자료없음
- 저장: 자료없음
- 폐기: 자료없음
- 다. 유해, 위험성 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, 위험성
- NFPA 지수: 보건-0 화재-0 반응성-0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 및 관용명	CAS 번호	함유량(%)
Anionic aqueous emulsion of an ethylene acrylic acid (EAA) copolymer wax	영업비밀	30
Water	7732-18-5	70

4. 응급조치 요령

가. 눈에 들어갔을 때	: 흐르는 물에 세척할 것. 콘택트 렌즈를 제거할 것 손상되지 않은 눈을 보호할 것. 행구는 동안 눈을 크게 뜰 것 만약 자극이 계속 되면 전문의와 상담할 것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	: 오염된 옷과 신발은 즉시 벗을 것. 비누와 충분한 물로 세척할 것 징후가 계속 될 경우 의사와 상담할 것
다. 흡입했을 때	: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것 의식이 없을 경우 회복이 가능한 자세와 의사의 조언을 구할 것 징후가 계속 될 경우 의사와 상담할 것
라. 섭취했을 때	: 기도를 깨끗이 유지할 것 우유나 알콜음료를 먹지 말 것 의식이 없을 경우 입 안으로는 아무것도 넣지 말 것 징후가 지속될 경우, 의사와 상담할 것
마.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	: 진료 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의사에게 보일 것 지켜줄 사람이 없는 환자의 곁을 떠나지 말 것

5. 폭발, 화재시 대처방법

가. 적절한(부적절한 소화제)	: 주변환경 및 지역상황에 적합한 소화제 사용할 것 물스프레이, 거품, 이산화탄소, 건조파우더 -부적절한 소화제: 고압 물 분사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	: 연소시 자극성 증기 발생
다.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	: 산소호흡기가 부착된 방화복 착용 및 특수보호장비 사용할 것 화학적 화재의 표준 절차를 지킬 것

6.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
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	: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사람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것 발화원을 모두 제거할 것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	: 누출물이 하수구 혹은 지표수/지하수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누출량이 많을 경우 119나 환경부, 지방환경관리청, 시/도(환경지도과)에 신고할 것
다. 정화 또는 제거방법	: 형겅(천), 양털과 같은 흡착제로 누출물을 흡착시켜 수거할 것 처분을 위해 밀봉된 용기는 적절한 곳에 보관할 것 적절한 장비를 이용하여 수거할 것 폐기물 관리법(환경부)에 의거 처리할 것

7. 취급 및 저장 방법

가. 안전취급요령	: 작업장 내 노출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말 것 눈과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 피할 것(신체보호 위해 8번항 참고) 작업장 내 흡연 및 취식을 금함 용기는 완전히 밀봉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할 것 작업장을 충분히 환기시키고 폐수는 적절한 기준에 맞추어 처리할 것 화재 및 폭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보: - 발화원으로부터 멀리할 것, 금연 - 열로부터 보호할 것
-----------	---

- 정전기로부터 보호할 것
- 어떤 다른 백열성의 물질 또는 노출된 불꽃에서 뿌리지 말 것

나. 보관 방법 : 인화성물질로부터 격리하여 보관할 것, 금연
 용기는 완전히 밀봉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할 것
 전자설비 혹은 작업원료는 물질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취급할 것
 라벨 예방 문구를 확인할 것

8. 노출 방지 및 개인보호구

- 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- 1) 국내규정(고용노동부)
 - 자료없음
 - 2) ACGIH 규정
 - 자료없음
 - 3) 생물학적 노출기준
 - 자료없음
- 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 : 지역배기장치 또는 공기 중에 추천된 노출하한 이하로 비산입자를 조절할 수 있는 공학적 조절장치, 먼지, 연기, 연무 등이 생겼을시 비산된 것이 노출제한 이하로 되도록 배기장치를 사용할 것
- 다. 개인보호구
- 1) 호흡기 보호 : 적절한 방독마스크를 착용할 것
 일반적으로 개인호흡기보호구는 요구되지 않음
 - 2) 눈 보호 : 보호안경을 밀착 착용할 것
 - 3) 손 보호 : 장갑 재질: Nitrile rubber
 - 적절한 장갑을 선택하는 것은 재질 뿐 아니라 품질의 추가 인증에도 관련이 있으며 제조자에 따라 다양함
 - 본 제품은 몇 개의 물질로 이루어진 제재이므로 장갑 재질의 내성을 미리 계산할 수 없으며 사용 전에 확인하여야 함
 - 4) 신체보호 : 적합한 내화화성 보호의를 착용할 것
- 라. 위생상 주의사항 : 휴식 전 및 작업 종료 시에 손을 씻을 것
 작업 중 취식, 취음, 흡연하거나 냄새를 맡지 말 것
 음식물, 음료 및 사료와 격리하여 보관할 것
 모든 오염된 의복은 즉시 벗을 것

9. 물리, 화학적 특성

- 가. 외 관 : 물리적 상태: 액체, 색상: 백색
- 나. 냄새 : 자료없음
- 다. 냄새역치 : 자료없음
- 라. pH : 8 (20℃)
- 마. 녹는점/ 범위 : 0℃
- 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: 100℃
- 사. 인화점 : 해당없음
- 아. 증발속도 : 자료없음
- 자. 인화성(고체,기체): 자료없음
- 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: 자료없음
- 카. 증기압 : 자료없음
- 타. 용해도 : 수용성
- 파. 증기밀도 : 자료없음

마. 기타 유해 영향: 자료없음

13. 폐기시 주의사항

- 가. 폐기물관리법상규제현황 : 지정 폐기물임
나. 폐기 방법 : 제품은 지방법에 저축이 안 될 경우 소각처리할 수 있으며
빈 용기는 재활용이나 폐기처분을 위해 등록업체에 의해
처리해야 됨
다. 폐기시 주의사항 : 남아있는 내용물은 비울 것
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폐기 처리할 것
빈 용기는 재사용하지 말 것
빈 용기는 태우거나 절단토치를 사용하지 말 것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- 가. 유엔번호(UN NO.) : 자료없음
나. 적정선적명 : 자료없음
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: 자료없음
라. 용기 등급 : 자료없음
마. 해양오염물질 : 자료없음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:
-화재시 비상조치: 자료없음
-유출시 비상조치: 자료없음

Land transport

ADR/RID

위험물질 아님

Sea transport

IMDG

위험물질 아님

Air transport

IATA-DGR

위험물질 아님

15. 법적 규제 현황

- 가.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규제 : 자료없음
나. 화학물질등록평가법(화평법) 및 화학물질관리법(화관법)에 의한 규제:
사고대비물질: 해당없음
금지물질: 해당없음
허가물질: 해당없음
제한물질: 해당없음
유독물질: 해당없음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자료없음
마.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

1999/45/EC, 67/548/EEC에 의한 분류 :

EC-directives 67/548/EEC 또는 99/45/EC의 기준으로 볼 때 위험물질이 아님

EC 규정 No 1272/2008에 의한 라벨링 & 분류:

EC 규정 No 1272/2008의 기준으로 볼때 위험물질 아님

16. 기타 참고 사항

가. 자료의 출처

BYK-Cera bv에서 작성한 영문 MSDS

KOSHA(한국안전관리공단)

NCIS(화학물질정보시스템)

NITE(일본,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)

EU Directive 67/548/EEC(Annex-I)

나. 최초 작성일자: 2016년 12월 13일

다.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: 2016년 12월 13일(REV 0)

라. 기타: 해당없음

* 이 MSDS는 현재 BYK-Cera사의 최선의 지식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며,
이것이 제품의 특성을 보증하기 위해 작성된 것은 아님